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5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

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감시관”을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로, “지도·점검 업무”를 “지도·점검업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직제 제7조제2항제7호”를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환경수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단속 및 조사”를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로, “환경법위반행위”를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를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로, “해제하여야”를 “해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를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를 “구체적인 직무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으로 하며, 제5호 중 “환경법위반행위”를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로 한다.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출입·검사”를 “출입·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요구”를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위반부과금액의 부과기준

가. 위반부과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 횟수와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액의 구분	기준부과율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1)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천분의 25 이하	1천분의 25 초과 1천분의 50 이하
2)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자	1천분의 30 이하	1천분의 30 초과 1천분의 50 이하

나. 기준부과율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1에 따른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2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법 제12조제2항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란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정화비용의 부과기준

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적으로 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화에 필요한 조사, 설계, 공사 및 검증 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불법배출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6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횟수 및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기준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개별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세 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31154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천법」 제23조”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을 “댐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으로, “확정하여야”를 “확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용허가: 관할 홍수통제소장